

【 5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7. 2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부속토지의 부분을 "건축물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 제1항)
- 나. 개발제한구역내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할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제2항)
-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 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 2)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래시장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 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 .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13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② (생략) 【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li><li>2. 시장재개발, 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li></ol>



현행	개정안
4. (생략)	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현행과 같음)

#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220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6월 23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등을 신설하고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 보안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부속토지의 부분을 "건축물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11조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내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의거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제11조제2항 신설).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조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로,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부"로 각각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12조).

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래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며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제12조의 2 신설).

마. 제13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각각 조문 개정하려는 것임(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7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 세워서 작성한것)를 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9 - 1287, 1288).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9 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축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 14 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감면)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 15 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